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8

발의연월일: 2020. 10. 16.

발 의 자: 조해진 · 윤영석 · 윤창현

최춘식 · 최형두 · 윤희숙

김태호 · 조수진 · 성일종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세무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9%(2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 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100% 농업인이 출자한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 농업인에 대한 배당 등의 감소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12%) 적용구간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여 합병을 통한 조합법인 규모화를 유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을 "조합법인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 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u>조</u>합법인간-----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

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